

신문방송국규정

제정 : 2011.07.30

개정 : 2011.11.22

개정 : 2013.04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의 교내방송 및 대원소식지를 통하여 학생 언론활동을 보장하고 문화활동 및 행복한 캠퍼스 창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신문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 11. 22., 2021.12.01>

제2조(명칭) 본 신문방송국을 대원대학교 신문방송국(이하 “본 국” 이라 한다)이라 한다. <개정 2011. 11. 22., 2021.12.01>

제3조(소재지) 본 국은 본 대학교 내에 둔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2장 사업 및 조직

제4조(사업) 본 국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본 대학교의 대원소식지 발행 <개정 2021.12.01.>
2. 본 대학교의 교내 방송 <개정 2021.12.01.>
3. 대내·외 홍보활동 <개정 2021.12.01.>
4. 기타 본 국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5조(조직) 본 국에는 신문방송국장, 간사로 구성된 임원과 교내 방송국의 실무를 담당하는 학생으로 신문편집부장, 방송부장, 신문기자, 방송국원 등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3. 04. 01.>

제6조(임원의 직무)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신문방송국장 : 국장은 전임교원 이상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여 신문방송국의 발행

인이 되며, 본 국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본 국을 대표한다. <개정 2013. 04. 01.>

2. <삭제 2013. 04. 01.>

3. 간사 : 신문방송국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본 국의 예산관리 및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신문기자 및 방송국원을 지도·통솔한다. <개정 2013. 04. 01., 2021.12.01.>

제7조(기자, 방송국원의 자격 및 임무) 본 국의 실무를 담당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방송부장 및 편집부장 : 학생 기자와 방송국원 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능력이 우수한 자를 주간의 추천에 의해 신문방송국장이 임명하며 방송부장은 국원을 대표하여 방송 편성 제작에 참여하고 편집부장은 기사를 대표하여 대원소식지 편집에 참여한다.

2. 기자 및 방송국원 : 기자는 대원소식지에 관한 편집 및 취재를 담당하며 방송국원은 방송업무를 담당한다.

제8조(기자 및 방송국원 선발) 본 국의 신문편집부장, 방송부장, 기자 및 방송국원은 학과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. <개정 2013. 04. 01.>

제9조(설치) 본 국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신문방송국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주간, 입학학생취업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간이 된다. <개정 2023.10.16.>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③ 위원회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주간의 추천으로 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본 국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본 국의 사업계획, 예산편성 및 결산, 제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2조(위원회 회의) ① 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1.12.01.>

제3장 재 정

제13조(활동비) 본 국의 재정은 교비와 기타보조금으로 하며, 신문편집부장, 방송부장, 신문기자 및 방송국원에게는 국장의 승인을 얻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2013. 04. 01., 2021.12.01.>

제4장 보 칙

제14조(원고) 대학신문에 게재할 기사의 원고와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방송 원고는 국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04. 01.>

제15조(중립과 독립의 원칙) 본 국은 방송과 취재, 편집에 있어서 중립과 독립의 원칙을 고수하며 본 국의 신문기자 및 방송국원은 학생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3. 04. 0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